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

제1조(이용계약에 관한 사항)

—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, 장기요양등급,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.

1. 계약기간

- ①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.
-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.

1.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

2.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

- ④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8.00.00.>

2. 계약의 목적

노인복지법,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,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.

- ①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
-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-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

3. 서비스 계약체결

① 신청자에게 서비스제공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동의를 받은 후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.

②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 수급자(보호자)에게 1부를 제공한다.

※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관할 시·군·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※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4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- ①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.
-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% 부담한다.
-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

2024년 요양급여수가 변경안내

두리재가노인복지센터



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안내

2024년 월 이용료 한도액 - 한도액 초과시 본인부담금이 100% 추가됩니다.
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2023	1,885,000 원	1,690,000 원	1,417,200 원	1,306,200 원	1,121,100 원	624,600 원
2024	2,069,900 원	1,869,600 원	1,455,800 원	1,341,800 원	1,151,600 원	643,700 원
증가액	184,900 원	179,600 원	38,600 원	35,600 원	30,500 원	17,100 원

2024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(일반15% 기준입니다.)

등급		2023년 수가	2023년 본인부담금	2024년 수가	2024년 본인부담금
3시간이상 ~ 6시간미만	1등급	38,630 원	5,795 원	39,810 원	5,972 원
	2등급	35,760 원	5,364 원	36,850 원	5,528 원
	3등급	33,010 원	4,952 원	34,020 원	5,103 원
	4등급	31,510 원	4,727 원	32,470 원	4,871 원
	5등급	30,000 원	4,500 원	30,920 원	4,638 원
	인지지원등급	30,000 원	4,500 원	30,920 원	4,638 원
6시간이상 ~ 8시간미만	1등급	51,780 원	7,767 원	53,360 원	8,004 원
	2등급	47,960 원	7,194 원	49,420 원	7,413 원
	3등급	44,270 원	6,641 원	45,620 원	6,843 원
	4등급	42,770 원	6,416 원	44,070 원	6,611 원
	5등급	41,240 원	6,186 원	42,500 원	6,375 원
	인지지원등급	41,240 원	6,186 원	42,500 원	6,375 원
8시간이상 ~ 10시간미만	1등급	64,400 원	9,660 원	66,360 원	9,954 원
	2등급	59,660 원	8,949 원	61,480 원	9,222 원
	3등급	55,080 원	8,262 원	56,760 원	8,514 원
	4등급	53,580 원	8,037 원	55,210 원	8,282 원
	5등급	52,050 원	7,808 원	53,640 원	8,046 원
	인지지원등급	52,050 원	7,808 원	53,640 원	8,046 원
10시간이상 ~ 13시간이하 (2021년까지는 12시간 미만)	1등급	70,950 원	10,643 원	73,110 원	10,967 원
	2등급	65,720 원	9,858 원	67,720 원	10,158 원
	3등급	60,720 원	9,108 원	62,570 원	9,386 원

5.서비스 품질보장

- ①비밀보장: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.
- ②기록 및 공개: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 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.
- ③부당청구금지 :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, 기능 ,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하며 ,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.

제2조(계약자 , 당사자의 의무)

1.서비스 제공자의 의무

- ①수급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의무 (단 , 병원 입원 시 간호 , 간병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)
- ②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연락 할 의무(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제외)

2.서비스 제공자의 권리

- ①수급자(보호자)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거부할 권리
- ②고충처리를 요구할 권리
- ③차별받지 않을 권리
- ④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

3.수급자의 의무

- ①월 이용료 납부 의무
- ②보호자의 인적사항 , 연락처 변동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
- ③기관의 규칙 이행 의무

4.수급자의 권리

- ①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으며 ,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
- ②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
- ③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
- ④간호와 재활서비스를 받으며 , 서비스의 내용에 대하여 알 권리
- ⑤직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며 ,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, 존경을 받을 권리
- ⑥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
- ⑦친지 , 지인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가할 권리
- ⑧기관에 대해 불편한 사항이 있을 시 개선을 요구할 권리

5.신원인수인의 권리

- ① 기관에서 파악한 욕구사정에 의거 필요한 급여 및 제공시간을 요청할 수 있으며

그에 따른 “장기요양급여명세서”를 받을 권리

-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
-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
-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
6. 신원인수인의 의무

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기 위해서 해당 요양기관과 “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”을 체결 후 날인하며 기관에서 발행한 “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”에 서명하고 기관에서 제공한 “장기요양 급여비용명세서”의 본인 부담금을 납입 할 의무

- ②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
- ③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
- ④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
- 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
-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,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

제3조(계약자의 해제)

1. 대상자(보호자)는 다음 각 호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.

-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-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③ 기타 대상자(보호자)의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

2. 기관은 다음 각 호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(보호자)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.

-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
-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- ④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
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- 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- ⑥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
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- ⑦ 3회 이상 이용료(본인부담금)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- ⑧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
- ⑨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- ⑩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. (단,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제를 유보할
수 있다.)
- ⑪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3. 대상자(보호자)는 제11조제1항의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.
4. 기관은 제11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제 의사를 장기요양 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(보호자)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.